**근로시간 단축 (재)심의 결정서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신청인** | **성명** | 　 | **사번** | 　 |
| **소속** | 　 | **직위(직급)** | 　 |
| **신청 구분** | □ 임신 □ 육아 □ 가족돌봄 □ 본인건강 □ 은퇴준비 □ 학업 □ 기타 |
| **단축근무****신청기간** | 20 년 월 일부터20 년 월 일까지 (총 개월) |
| **결정 내역** | 승인 / 불승인 / 조정 |
| **사유****(불승인 또는 조정시)** | Ex) □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□ 대체인력 채용 곤란 □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□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발생 □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|
| **비고** |  |

**위와 같이 단축근로 심의를 결정합니다.**

 년 월 일

인사위원장 : (인 또는 서명)

사업대표: (인 또는 서명)

|  |  |
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근로시간 단축제도** |
| **임신기** | **육아기** | **가족돌봄** |
| **법적근거** | 근로기준법 제 74조 | 남녀고용평등법제 19조의 2항 | 남녀고용평등법제 22조의 3항 |
| **신청사유** | 임신기 | 육아기 | 가족돌봄, 본인건강, 은퇴준비, 학업 |
| **대상** |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 근로자 |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(근속기간 6개월 이상) | **(근속기간 6개월 이상)**- **가족돌봄** :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해 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,\* 가족의 범위: 구성원의 조부모, 부모, 배우자 부모,자녀, 손자녀- **본인건강**: 신체적,정신적, 건강상의 문제로 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- **은퇴준비**: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 준비를  하는 경우(재취업,창업, 사회공헌 활동 등)- **학업**: 대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과정, 직업능력, 개발훈련, 일정자격 취득이 필요한 경우  (독학, 단순 취미활동, 사업주 주도의 직업 훈련은 제외) |
| **단축시간** | 1일 2시간 단축(1일 6시간 근무) | 주 15~35시간 근무 | 주 15~30시간 근무 |
| **단축기간** |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 기간 | 1년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) | 최초 1년(1회 연장 포함 최대 3년, 학업은 1년) |
| **근로조건** | - 연장근로 금지- 임금 삭감 금지 | - 근로자 요청 시 주 12시간 범위내 연장근로 가능- 임금 삭감 시 통상임금 한정 | - 근로자 요청 시 주 12시간 범위내 연장근로 가능- 임금 삭감시 통상임금 한정-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|